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948

발의연월일: 2025. 3. 14.

발 의 자:한정애·추미애·이병진

박희승 • 홍기원 • 김기표

주철현 · 조인철 · 김동아

정일영 · 이학영 · 송옥주

강준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신축 또는 증축 등을 하려는 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중수도 시설 보급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중수도의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활용비율도 극히 낮아 물 수요관리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중수도 설치기준인 물 재이용 비율을 현행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하고, 중수도 설치·운영의 기준을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하향하며,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시설물에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각급 학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

하는 건축물을 추가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수도를 설치· 관리·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 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수도 설치 및 이용의 활성화 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 등).

법률 제 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10퍼센트"를 각각 "2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6만제곱미터"를 "2만제곱미터"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3부터 제2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퍼센트"를 "20퍼센트"로, "설치하여야"를 "설치·운영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0퍼센트"를 "2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3.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주택
- 2의4.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2의5. 「건축법」 제70조에 따른 건축물
- ②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관

- 리·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① 제1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 등 필요 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2항제2호 및 제2호의2 중 "설치하지"를 각각 "설치·운영하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및 제4호의2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9조제12항을 위반하여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수도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중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제9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시설물을 신축(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	
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u>10퍼</u>	<u>20퍼센트</u> -
<u>센트</u>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	
록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물 사용량의 <u>10퍼</u>	<u>20퍼센트</u>
<u>센트</u> 이상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	1
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	
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u>6만제곱미터</u> 이상인	<u>2만제곱미터</u>
시설물	
2. • 2의2. (생 략)	2. • 2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신 설>

3. (생략)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 른 지방공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 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환 경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 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하여 야 하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중수도의 운영 및 관리 에 관하여는 개발사업의 시행 자와 중수도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등이 개발사업 의 시행 전에 협의하여 정해야

2의3. 「수택법」 제2소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전체 세		
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주택		
2의4. 「초・중등교육법」 제2		
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2의5.「건축법」 제70조에 따른		
건축물		
3. (현행과 같음)		
2		
<u>20</u>		
퍼센트		
<u>설치·운영하여</u>		
<u>o</u> }		

한다. 다만,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 · 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 략) ③ ~ ①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28조(과태료) ① (생 략) 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20퍼센트</u>
1. ~ 5. (현행과 같음)
③ ~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
자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
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수도
를 관리 · 운영하는 자에 대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u>수 있다.</u>
④ 제1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u> 정한다.</u>
]2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1. (생략)
-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수 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 2의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수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 3. (생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3. (생략)
- 4.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수
 도를 운영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한 자
 5. ~ 7. (생 략)

<u><신 설></u>

8. (생략)

④·⑤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설치 • 운영하지</u>
2의2
<u>설치 • 운영하지</u>
3. (현행과 같음)
3
1. ~ 3. (현행과 같음)
<u><삭 제></u>

<삭 제>

- 5. ~ 7. (현행과 같음)
 7의2. 제9조제12항을 위반하여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 8. (현행과 같음)
- ④·⑤ (현행과 같음)